

□ 제안이유

○ 시보발행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복리후생비 지급근거가 없어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던 보수, 수당, 여비 이외에 복리후생비를 지방자치단체에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토록함. (안 제6조 제3항)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범위,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과 지방자치단체에산편성지침, 부천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6 조(편집주간 및 보조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u>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수당, 여비 등의 범위,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 부천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u>	제 6 조(편집주간 및 보조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범위,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과 지방자치단체에산편성지침, 부천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u>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1995. 5. 11.
-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5. 5. 12.
- 라. 상정일자 : 1995. 5. 22.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기존 위임되어 있는 업무와의 연계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

나. 주요골자

- 공중위생관련 숙박업허가, 목욕장업허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안 제2조)
- 교통유발부담금(안 제2조, 별표1)
-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및 산불금지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조, 별표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공중위생관련 업무는 모두 구청에 이관 됩니까?	○ 그렇습니다.
○ 산불예방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 공익근무요원 25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향후 증원되어 80명이 활동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2
의 결	95. 5. 30
년 월 일	(제 38 회)

제출년월일 : 1995. 5. 1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기존 위임되어 있는 업무와의 연계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

□ 주요골자

- 공중위생관련 숙박업허가, 목욕장업허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안 제2조)
- 교통유발부담금(안 제2조, 별표1)
-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및 산출금지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조, 별표2)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 기타참고사항 : 별첨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별표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중” 사회과 위임사무명난 “제11호”다음에 위생과 위임사무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식품집객업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제12호”로 하고 동권한의 “1내지-10”을 “①내지 ⑩”으로 하고, “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단, 시장권한사항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로서 적용대상 업종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제13호”로, 동권한의 15의 위임사무명을 “과징금처분”으로 근거법 적용을 “법 제25조의2”로 하여 “1 내지 16”을 “① 내지 ⑯”으로 하며, (적용대상) 제1호중 다음에 “숙박업, 목욕장업”을, “세탁업” 다음에 “나목의 위생관리용역업”을 삽입한다.

“산업과” 다음에 교통행정과를 별표1과 같이 하고, 녹지과에 “제16호 및 제17호”를 별표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후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

실과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교 통 행정과	1. 교통유발부담금업무 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사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별표2]

1.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

실과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녹지과	16.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공원의 관리 (단, 구 관할구역 내 어린이 공원 및 미시설 공원) ② 녹지의 관리(단, 구관할구역 내 녹지) ③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단, 구 관리 어린이 공원 및 녹지)	도시공원법 제5조 동법 제 11 조 제 1 항 동법 제8조, 제12조의 2
	17.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단,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입산허가 위반자에 한함)	산림법 제125조제2항, 제4항제3호, 제5항 동법시행령 제112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사회과	1~11 (생략)		사회과	1~11 (현행과 같음)					
위생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1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식품점 객업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한다)제22조				
	제8호의 식품점객업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한다)제22조							
	1 허가(신고)및 변경허가(변경신고)	법 제17조		① 허가(신고)및 변경허가(변경신고)	법제 17 조				
	2 출입검사 및 수거	법 제23조		② 출입검사 및 수거	법제 23 조				
	3 조건부 영업허가	법 제55조		③ 조건부 영업 허가	법제 55 조				
	4 시정명령	법 제56조		④ 시정명령	법제 56 조				
	5 폐기처분	법 제57조		⑤ 폐기처분	법제 57 조				
	6 시설개수 명령	법 제58조		⑥ 시설개수명령	법제 58 조				
	7 허가취소	법 제62조		⑦ 허가취소	법제 62 조				
	8 폐쇄조치	법 제64조		⑧ 폐쇄조치	법제 64 조				
9 청 문	법 제65조		⑨ 청 문	법제 65 조					
10 파징금 처분			⑩ 파징금 처분						
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단 시장 권한 사항중)		공중위생법(이하“법”이라고한다)	13	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단 시장 권한)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현		행		개		안	
실과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실과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실과별	위 임 사 무 명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로서 적 용 대상 업종명에 열거된 것에 한함)			사항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로 서 적용대상업종에 열거된 것에 한함)			
1. 시설 기준 등 등급기준	법 제3조			① 시설기준 등 등급기준	법 제3조		
2.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법 제4조			②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법 제4조		
3. 조건부 영업 허가	법 제6조			③ 조건부 영업허가	법 제6조		
4.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	법 제7조			④ 영업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7조		
5. 영업의 승계	법 제8조			⑤ 영업의 승계	법 제8조		
6. 영업의 계속	법 제10조			⑥ 영업의 계속	법 제10조		
7. 출임·검사	법 제20조			⑦ 출임·검사	법 제20조		
8.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법 제21조			⑧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법 제21조		
9. 폐기처분	법 제22조			⑨ 폐기처분	법 제22조		
10. 행정처분	법 제23조			⑩ 행정처분	법 제23조		
11. 청 문	법 제24조			⑪ 청 문	법 제24조		
12. 폐쇄조치	법 제25조			⑫ 폐쇄조치	법 제25조		
13. 공중이용 시설의 위생관리	법 제26조			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법 제26조		

현			개			안	
실과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실과별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4. 출입 검사 및 관리의 시정 요구 등 15. 공동 금수 시설의 관리 16. 파테로 부과 징수 절차 (적용대상) ○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중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 및 중 가목의 세탁업 및 다목의 위생 처리업과 동법 제26조의 공중이용 시설	법 제 29 조 법 제 31 조 법 제 44 조		⑩ 출입검사 및 관리의 시정 요구 등 ⑪ 과징금 처분 ⑫ 파테로 부과 징수 절차(적용대상) ○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 및 제2호중 가목의 세탁업 나목의 위생관리용역업, 다목의 위생처리업과 동법제26조의 공중이용시설	법제 29 조 법제 25 조의2 법제 44 조		
(신설)	(신 설)		교통행정과	1. 교통유발부담금업무 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련사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녹지과	1~15(생 략)		녹지과	1~15(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시 설)			16.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공원의 관리(단, 구 관할구역 내 어린이 공원 및 미시설공원) ② 녹지의 관리(단, 구 관할구역 내 녹지) ③ 도시공원·녹지접용 허가(단, 구 관리어린이 공원 및 녹지)	도시공원법 제5조 동법제11조 제1항 동법제8조, 제12조의2				
	(신 설)			17.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자 파태로 부과·징수	산림법 제125조 제2항, 제4항, 제3호, 제5항, 동법시행령 제112조의2				
				(단, 오물 또는 쓰레기투기, 취사행위, 입산허가 위반자에 한함)	2				